

## 《연구자 권리선언과 연구자복지법》 학술대회에 대한 토론문

한보성(인문학협동조합)

작년 11월 16일 나온 <연구자 권리선언>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연구 노동이 “체계적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하며,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연구 행위는, 때로는 유희에 가까운 비생산적 행위로, 또 다른 경우에는 사명을 갖고 임하는 숭고함으로 신비화되기 일쑤였으나, 이러한 이중적 통념은 연구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가둡니다. 그러나 연구가 노동이며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라는 <연구자 권리선언>은 연구가 개인적 행위 이상이며, 그 산물인 지식이 사회와 인류 전체의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구 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나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지속성의 보장에 대한 요구를 연구자의 특권적인 지위 옹호로 받아들여 반발하는 의견 역시 상당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든 사회적 쟁점이 그렇듯 답은 지난하지만 꾸준한 설득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석학이 학문을 선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정규직 교수에게 자원을 몰아주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학문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말입니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삶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잦고 그래서 스스로의 ‘연구자성’마저 확신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상태의 고립된 주체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당사자운동 역시 요청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복지법을 예상해보면, 유사한 의도로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을 참고했을 때, 연구자복지법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연구자를 찾아내고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리라 예상합니다. 연구자 복지 지원이 지역·전공·젠더·연령·장애 여부 등에 따른 불균형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연구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소득 등에 대한 인적 조사를 넘어, 이미 대학원 학생을 받지 못하거나 학과를 폐쇄하게 된 대학들에 대한 조사 역시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학별 조사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자복지법이 시행된다면 연구자복지재단(가칭)과 같은 단체가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안하려 합니다.

## 1. 기본 생계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회보험료 지원, 창작 지원금 지원 등의 사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자금의 용자나 사회보험료의 지원은 연구자 복지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리라 생각되는 한편, 창작 지원금과 같은 항목은 신진연구자에게 부담되곤 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논문 게재료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2. 연구공간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연구 지속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연구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도저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복지재단이 직접 지역별 연구공간을 확보해도 되겠지만, 대학이나 공공도서관 등의 단위와 협력해 연구공간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 3. 정보접근권 보장

소속이 계속 바뀌는 비정규직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대출이나 논문구독 등의 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계약만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도서대출과 논문구독을 지원하거나, 나아가 국가기관이 연구자의 신분을 보장해 소속 대학이 아닌 대학의 도서관 역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대출뿐 아니라 이공계의 경우 실험실습장비 및 기구, 예체능계의 경우 연습실·기구 사용 등에도 연구자신분보장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수업·세미나·회의 등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들은 회의 프로그램(Zoom, WebEx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무료 채팅방을 들락날락하거나 친분이 있는 강사에게 채팅방 개설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용·실습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구독 지원 역시 연구자 지원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연구자 심리상담 지원

박사과정 수료 후, 생계 해결을 위해 많은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를 옮겨다니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연구자들 중, 경제적 궁핍함을 겪거나 학위 취득이 지연되면서 우울증·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한편,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한 건강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대학원생의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일이 여럿 있었는데

도, 성폭력과 노동착취를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폭력 해결기구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학내기구의 경우 학적과 관련한 처분만을 할 수 있어 민형사상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해서 지레 포기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돕는 별도의 기구 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 장애인 연구자 활동지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목적으로 일정시간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상당하고 지원시간 이상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구 행위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장애인 연구자의 경우 비장애인 연구자에 비해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접근성의 격차를 확인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장애인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추가시간 지원이나, 베리어프리 접근을 돕는 장비·기구의 지급·대여에 대한 지원 역시 연구자복지 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 7. 출산 및 육아수당 지급

직장인들이 보장받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연구자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으로,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일정 일수 이상의 휴가기간을 보장하도록, 휴가기간 중 연구행위 지시 등에 대한 경고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